

#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반도핑 규정

2014. 5.15.개정

## 전문(반도핑에 대한 대한볼링협회의 책무)

대한볼링협회는 2003년 3월 5일 채택된 세계반도핑 규약 (World Anti-Doping Code: 이하 WADA 규약이라고 한다)과 2007년 2월 5일 비준되고 2007년 4월 1일 발효된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의 도핑을 근절하고, WADA 규약에 규정된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NOC라고 한다)로서의 책임과 도핑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조장하기 위해 2008년 5월 7일부로 대한올림픽위원회 반도핑 규정(Korean Olympic committee Anti-Doping Rules: 이하 KOC 반도핑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시행에 의거 본 협회 반도핑 규정을 제정 하고 시행한다.

## WADA 규약과 대한볼링협회 반도핑 규정의 기본원리

도핑 방지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포츠의 근본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있다. 스포츠의 근본적 가치는 많은 경우에 “스포츠 정신”으로 불리며 “올림픽 정신”의 핵심이기도 하며, 어떻게 경기를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스포츠 정신”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찬양이며 아래의 가치들로 특징 되어진다.

- ① 윤리, 공정한 경기와 정직
- ② 건강
- ③ 뛰어난 경기력
- ④ 품성과 교육(Character and Education)
- ⑤ 재미와 즐거움
- ⑥ 협동정신
- ⑦ 헌신과 책임
- ⑧ 규칙과 법률의 준수
- ⑨ 자신 및 다른 참가자에 대한 존경
- ⑩ 용기
- ⑪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도핑은 근본적으로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 제1조 (세계반도핑 규약(WADA 규약))

1.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oreaAnti-Doping Agency: 이하 KADA 라고 한다)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도핑 컨트롤 과정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2. 세계반도핑 규약에 의거, 대한민국의 NOC 가맹경기단체로서 본 협회는 아래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 ① 세계반도핑 규약에 부합되는 반도핑 정책과 규정을 보장
  - ② 본 협회 산하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 해외지부 회원 또는 인준 조건으로 본 협회 반도핑 정책과 규정이 세계반도핑 규약의 관련 조항에 부합되도록 요구
  - ③ 필요한 경우, 모든 선수에게 정기적으로 시료채취에 협조하고 정확한 최신 소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 ④ 국가 반도핑기구인 KADA와의 협력
  - ⑤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지원요원(코치, 트레이너, 임원, 의무요원 등)이 대회 참가를 조건으로 WADA 규정 준수 요구
  - ⑥ 반도핑규정을 위반한 선수 또는 선수지원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 일부 또는 전체 재정지원 보류
  - ⑦ 세계반도핑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산하 관련단체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 재정지원 보류
  - ⑧ 본 협회 관할권내에서의 도핑과 관련된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잠재적 반도핑규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조사
  - ⑨ 반도핑교육의 촉진
  - ⑩ 유관조직이나 단체 및 기타 반도핑기구와의 협력

## 제2조 (본 협회 반도핑 규정의 적용)

1. 본 협회 반도핑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협회 등록 선수
  - ② 본 협회 대표선수
  - ③ 선수지원 인력(코치, 트레이너, 임원, 의무요원 등)
  - ④ 산하 시.도지부, 전국규모연맹체, 해외지부
2. 제재는 반도핑 규정을 위반하거나 도핑 위반 또는 기타 본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적용한다.

### 제3조 (의무)

#### 1. 선수는:

① 반도핑 규정이라고 불리는 반도핑기구 및 그들의 속한 국제경기연맹의 반도핑 정책 또는 규정 중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반도핑 정책과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료채취에 응해야 한다.

③ 반도핑 조항에 따라 자신이 복용하고 사용한 약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④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사용금지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자신이 받은 의료적 조치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반도핑 정책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

2. 필요한 경우, 선수들은 반도핑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한 최신의 소재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3. 선수지원요원은:

① 반도핑 규정이라고 불리는 반도핑 기구 및 본 협회 반도핑 정책과 규정중에서 자신과 자신들이 지원하는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반도핑 정책과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②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반도핑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수의 가치와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 하여야한다.

#### 4. 본 협회는:

①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세계반도핑규약에 의거, KADA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③ 세계반도핑 규약에 부합되는 반도핑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제경기연맹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반도핑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⑤ 아래의 사람들에게

가. 본 협회의 권한 하에 개최되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나. 본 협회나 본 협회가 인정한 클럽에 선수로 등록하거나 선수지원요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 세계반도핑 규정과 본 규정 및 해당경기단체의 반도핑 정책을 인정하고 준수하도록 요구 한다.

⑥ 아래의 사람들에게

가. 본 협회의 권한 하에 개최되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나. 본 협회나 본 협회가 인정한 클럽에 선수로 등록 된 선수들에게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확한 최신의 소재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⑦ 본 협회 회원의 요건으로서 회원이나 회원클럽의 정책 또는 규정이 국제반도핑 규약에 부합되도록 요구한다.

⑧ 국제반도핑 규약 및 본 협회 반도핑 정책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는:

① 국제경기연맹 또는 WADA 가맹기구 또는 다른 국내경기단체가 세계 반도핑 규약에 따라 관련 단체의 권한 범위내에서 반도핑 위반을 적발한 경우, 별도 청문회 없이 반도핑 적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② 필요한 경우, 주요 국제대회 전년도에 해당 경기단체의 정식회원이 아닌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료채취에 응하고 정확한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③ 반도핑 규정위반이나 도핑위반을 적발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KOC에 즉각 통지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가. 본 협회의 반도핑 정책이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

나. 본 협회의 국제경기연맹 반도핑 규정에 의거 본 협회 권한이나 통제 하에 있는 선수, 선수지원인력 또는 기타

④ KOC가 본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요구한 경우, 협조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본 협회는 반도핑기구 및 KADA가 국제반도핑규약에 의거 수행하는 등록 된 검사기구의 분석 결과를 인정한다.

### **제5조 (본 규정의 위반)**

1. 반도핑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본 규정에 위배 된다
2. 세계반도핑 규정 제 1, 2, 3, 4, 5, 6 및 17조는 반도핑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다.
3. 본 규정에 의해 본 협회의 KOC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 하는 것도 규정에 위배된다.

**제6조 (반도핑 규정 위반 및 도핑 위반의 인정)** 본 협회는 모든 반도핑 기구의 분석결과가 세계반도핑 규정에 부합되고 본 협회의 권한 범위내에서 행하였다면, 반도핑 위반자에 대한 모든 결정 사항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야 한다.

### **제7조 (본 협회의 제재)**

1. 반도핑 규정위반 행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회원자격, 대표팀 선발, 본 협회로부터 재정지원, 본 협회의 임원 취임의 자격이 정지된다.
2. 징계기간은 세계반도핑 규정 제 10조 및 11조에 의해 결정된다.
3. 본 협회는 반도핑 기구나 본 협회 산하 단체가 규정위반이 초범이나 재범이냐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 사전 제재를 인정한다.
4. 본 협회에 의해 제6조 위반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 ① 본 협회 법제상벌·선수보호위원회가 반도핑규정 위반정도에 의거 부과한 바에 따라 회원자격, 대표팀 선발, 본 협회로부터 재정지원, 본 협회의 임원 취임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② 반도핑 규정 위반이 아닌 도핑 위반을 범한 것으로 적발된 사람인 경우, 회원자격, 대표팀 선발, 본 협회로부터 재정지원, 본 협회의 임원 취임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8조 (징계절차)**

1. 반도핑 규정위반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례는 반도핑규정에 의거 결정되며, 세계반도핑규정 조항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2. 본 협회의 반도핑 징계위원회는 세계반도핑 규정 제8조에 의거 그 징계 절차를 제정 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통지)** 본 규정에 의거 징계를 부과한 후, 본 협회는 세부징계내용을 아래에 열거한 자에게 보낸다

- ① 대한올림픽위원회
- ② 세계반도핑규정 제 14조 1항에 의거 통지를 받게 된 자
- ③ KADA
- ④ WADA
- ⑤ 기타 통지할 필요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0조 (항소)**

1. 세계반도핑규정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당사자가 반도핑기구 또는 관련 본 협회의 산하단체 청문 및 징계 절차에서 항소나 기타법적인 권리를 먼저 마치지 않았을 경우, 본 협회의 반도핑 규정 위반 인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관련 반도핑기구 또는 본 협회 산하단체 청문 및 징계절차 과정에 항소를 한 경우에 본 협회는 해

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관련 재판소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2. 본 반도핑 규정에 의거한 판정은 세계반도핑규약 제 13조에 의거 항소할 수 있다. 그 판정은 항소기간 중에 항소기관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11조 (반도핑 위반 재심)** 만일 반도핑 규약 위반을 범한 것으로 기록된 선수가 반도핑 규약을 위반하지 않은것으로 판명되거나, 국제 반도핑 규약에 따른 국제 스포츠중재 재판소(CAS) 또는 다른 반도핑 기구의 항소 기구의 조치에 의해 관련 행위가 명백해지거나 면책 받았을 경우, 본 협회는 반도핑 규정 위반 및 반도핑 규정 위반에 따라 부과 된 제재를 반복 할 수 있다. 또한 제9조에 의거 징계를 통보한 자에게 결정 사항을 알려준다.

### **제12조 (해석)**

1. 본 규정에 사용한 모든 용어는 세계반도핑 규정에 사용 된 용어와 뜻이 같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거나, 해석이 불분명 한 경우 또는 세계반도핑 규정과 상충 될 경우에는 세계반도핑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 동의를 얻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